

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0. 4. 25
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임시회 제1차관광건설위원회(2000. 4. 19)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진흥국장 연 영 석)

가. 제안이유

'99. 12월 종합관광안내소가 완공됨에 따라 원활하고 체계적인 관광 안내의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「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」를 제정·시행 하여 우리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 나. 주요골자

### ○ 관광안내소의 위치 : 청주시에 설치

※ 대지 62.09평, 건물 53.5평(1층 35.7, 2층 17.8)

### ○ 관광안내소의 기능

-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
-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
- 관광홍보물 제작·배포
- 지역별·기능별 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

### ○ 관광안내소의 운영요원

- 임명 : 도지사(외국어통역안내원 자격소지자 우선 임용)
- 소속 : 직영운영시 충청북도, 위탁운영시 수탁자 소속
- 복무 :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

### ○ 관광안내소의 위탁

- 직영 및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
-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판매대금은 해당업체에 반환

### ○ 근거규정 : 시·도종합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지침

(문화관광부 지침)

### ○ 예산사항

- 운영비 : 70백만원(국비 35, 도비 35)

※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, 홍보물 제작비, 제세공과금 등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우리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지역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'99. 12월 완공된 충청북도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붙임 서류 :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(안)

##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충청지역의 관광홍보 및 관광객에 대한 여러가지 편의제공과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「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」(이하 “안내소”라 한다.)를 두고 지역관광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안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.

제3조(기능)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
2.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
3. 관광홍보물 제작·배포
4. 지역별·기능별 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
5. 기타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개발유치

제4조(운영요원) ①안내소에는 도지사가 임명한 운영요원을 둔다. 다만, 외국어통역안내원 자격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며 보수는 문화관광부지침에 의거 지급하고, 기타 운영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지급한다.

②운영요원의 소속은 각 호의 1의 경우와 같고,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1. 직영운영시 : 충청북도 소속
2. 위탁운영시 : 수탁자의 소속

제5조(위탁) ①도지사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.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시 도지사는 안내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관광부지침 및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,

수탁자는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은 일정기간 정산하여 해당업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관계법령, 문화관광부의 지침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감독)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시설이용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

제9조(의견청취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체운영규정)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